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9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2012. 07. 30. 전통시장 등에 대한 「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」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감면조례 중 이와 관련한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개정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나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2. 9. 27. ~ 10. 17. (의견없음)
- 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(감사담당관-10241, 2012.10.21.)
: 원안동의
- 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(가정복지과-41599, 2012.10.19.)
: 원안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(기획예산과-11571, 2012.11.14.)
: 원안의결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”를 “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「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<u>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.</u></p>	<p>제6조(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.</u></p>